



International Alert

September 2015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한국, 미국, 멕시코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OFFICES IN:

LOS ANGELES, CA
 SAN DIEGO, CA
 SAN MATEO, CA
 IRVINE, CA
 MONTGOMERY, AL
 LAGRANGE, GA
 FORT LEE, NJ
 SEOUL, KOREA
 HOUSTON, TX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지난해 발효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와 당장 현실로 다가온 OECD주도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보고의무 강화등의 영향으로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활동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의 자국내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2015년 여러가지 보고의무규정과 법률을 시행했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이 막대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멕시코의 규정들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미국은 지난 5월 상무국 산하 통계청(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미국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혹은 외국인들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새로운 보고의무를 시행하였습니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 (마킬라도라 기업은 전부해당)은 일괄적으로 2014년 투자및 재무자료를 보고(BE-10)하여야 하고 2014년포함 미국회사에 10%이상의 지분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45일내로 보고(BE-13)하는 규정입니다.

- BE-10은 에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통계목적의 Survey 임. 예전에는 BEA 에서 Survey 통보를 해온 경우에만 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 해당되는 법인이나 개인은 투자일 기준 45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BE-13은 미국법인이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Survey 입니다. 다음장에 설명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을 반드시 file 해야함. 결국 외국인 소유가 10% 이상인 회사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 [별금] 동 보고는 투자일 기준 45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불이행시 최소 2,500불에서 최대 25,00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불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BE-10의 보고기한은 2015년 6월 말인데 7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저희 고객들은 전부 기일은 준수하여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BEA 에 문의하여 늦게라도 보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BE-13의 경우 늦은경우 별도의 연장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

BE-10 (미국인의 해외투자)	BE-13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
<p>2014년도를 대상으로 실시</p> <p>대상 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최소10% 이상 보유했던 개인 또는 법인</p> <p>기존에 BE-10은 BEA에 의해 선택되어진 대상자들만 보고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조건이 충족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BE-10을 보고해야 함</p>	<p>2014년 11월에 부활한 Survey 로 2014년 1월로 소급적용</p> <p>2014년동안 미국에 투자한 해외 개인 또는 법인</p> <p>해외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며,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보고해야 함</p>

한국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8월 시행)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 이하에서 2년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2년중 183일) 기준과 일치 시킨것입니다.
-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OECD 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 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가격 관련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에 합의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OECD 와 긴밀한 협력과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BEPS 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감시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총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자국의 수익, 특수관계자간 거래 또는 이전가격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등이 타국가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이전가격내용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작성의무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제출기한	모회사(또는 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모회사 회계연도말 기준 1년 이내
제출대상	현지 과세당국	현지 과세당국	현지법인이 소재한 과세당국을 통해 서명국간 공유
포함내용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 무형자산, 연결재무재표 등의 재무활동 내용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내용 및 금액,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사업활동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멕시코

외국인투자 및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3월10일부로 발효된 법률에 따라 멕시코 외투법인은 아래와 같은 보고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연간 보고의무:
연간 총자산, 또는 총부채, 또는 총수익, 또는 총지출이 **MXN 110,000,000** 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소에 익년 4월 또는 5월까지 연간경제실적보고서를 제출
- 분기별 보고의무:
분기별 다음 항목에 대해 **MXN 20,000,000** 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외국인투자등록소에 보고
 - a. 새로운 자본금의 납입 또는 인출
 - b.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처분
 - c. 외국인 관계사 또는 주주로부터 차입 또는 대여금 발생
- 분기별 변경사항 보고항목:
 - a. 회사명, 주소, 업종의 변경
 - b. **MXN 20,000,000** 이상의 증자 또는 감자
-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외국인투자등록소에 보고 (위반시 벌과금)

CKP는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다수의 세법변호사와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조세팀은 미국과 한국 **Big 4 firm** 및 법무법인의 최고책임자를 역임한 변호사/경제학 박사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및 국제조세분야 컨설팅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과 멕시코의 세무당국과의 이전가격 사전협상(APA) 그리고 이전가격조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응환 박사(rapchoi@ckpcpas.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